

●보건복지부령 제735호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 인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“이수하여야”를 “이수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.

- 1.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- 2.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장실습의 이수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포함되는데,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국내 확산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현장실습이 운영되기 어려워짐에 따라,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●환경부령 제872호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환경부장관 인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신청서”를 “기상현상증명 신청서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(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(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”를 “별지 제11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기상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기상청 전자민원(minwon.kma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상현상증명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(팩스번호/전자우편 주소)	
	주소		
신청사항	기상현상의 종류	기간	
	기상요소		
	지점(지역)	지점정보 포함[]	
	용도 및 제출처	발급부수	부

「기상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
위탁받은 자()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아래 참조
------	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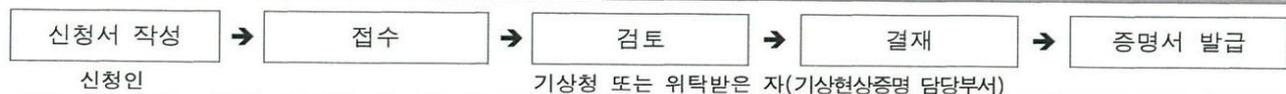
수수료

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,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비고: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작성방법

1. 기상현상의 종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.(예: 종관기상관측, 방재기상관측, 항공기상관측, 기상특보 등)
2.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.(예: 일별강수량, 일별평균기온, 일기상통계표, 호우주의보 등)
3. 지점(지역)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 또는 지역명을 적습니다.(예: 서울, 강릉, 충주, 서귀포 등)

처리절차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■ 기상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기상청 전자민원(minwon.kma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상자료제공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(팩스번호/전자우편 주소)	
	주소		
신청사항	기상자료의 종류	기간	
	기상요소		
	지점(지역)		
	용도 및 제출처	자료종류 및 발급부수	

「기상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
위탁받은 자()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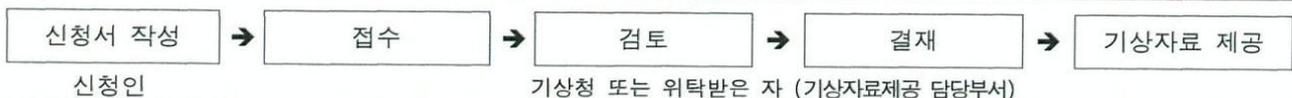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아래 참조
------	----	--------------

수수료

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,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비고: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■ 기상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기상청 전자민원(minwon.kma.go.kr)

[원본확인 문서번호:]

기상현상증명서

QR코드

증명사항	기상현상의 종류	기간
	기상요소	
	지점(지역)	
	기상현상의 내용	

「기상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현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상청장
위탁받은 자()



발급 시각:

- ◆ 본 증명서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·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◆ 위 자료는 관측 자료의 오류 보완 등 사후 품질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상현상증명서 서식에서 기상현상증명 신청인의 전화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관련 서식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환경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86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5항 본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른 법령에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. <고용노동부 제공>

●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5호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(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”를 “제출(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·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